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민병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85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발 의 자: 민병주, 김태수 의원(2명)
찬 성 자: 김경훈, 김영철, 김원중,
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
김형재, 남궁역, 남창진,
박상혁, 박 석, 박승진,
박영한, 옥재은, 유만희,
유정인, 이상욱, 이원형,
임종국, 장태용, 홍국표,
황유정, 황철규 의원(23
명)

1. 제안이유

- 통계청에 따르면,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1980년 86만2천명이었던 출생아수가 2023년 약 23만명으로 43년만에 약 73.4%나 급감하여 '저출생'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그러나,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구들은 그간 축적한 자산 또는 소득이 중앙정부의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초과하여 정책사각지대로 내몰림에 따라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임.
- 따라서,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, 시장이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자녀를 출생하거나 출생예정인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구에 서울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(안 제8조제6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시장은 자녀를 출생하거나 출생예정인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구에게 서울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,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서울공공주택 공급) ① ~ ⑤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(서울공공주택 공급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⑥ 시장은 자녀를 출생하거나 출생예정인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 구에게 서울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,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6항은 자녀를 출생하거나 출생예정인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구에게 서울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이홍래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